

# 贈 議政府右議政 花山府院君 諱 復

중 의정부 우의정

화산부원군

휘 복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또 연방은 소파로서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을 적은 명부를 달하는데 이를 사마방이라고 더 많이 부르며 문과는 용방龍榜 무과는 호방虎榜 이라고도 하였다. 여기에서 용방의 용과 호방의 호랑이는 용호상박으로서 동위이니 문무과를 정과로서 같이 대과로 보면 알 수 있다. 어찌던 공은 문무文武 겸兼 전지재로서 소과에 먼저 오르고 나서 다시 정과正科로서 무과武科로 급제及第하였는데 그 무예武藝가 전문했던 것으로 보이며 활쏘기와 말 타기에 능하여 급제하자 곧 숙의에 발탁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숙위는 곧 금근으로서 임금을 근위하는 정예군이다. 공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나오는 것은 세종7년 1425년 윤 7월 7일 병오일조丙午一條의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조선초초기에 지사는 육조의 합문閤門·통례원通禮院·사간원司諫院·승문원承文院등에 있는 직임으로 종3품관이었다. 그렇다면 공이 무과급제 8년에 종3품에 오를 만큼 무관으로서 고숙 승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이 과거되는 최규는 도사인데 도사는 지방감영과 경관의 여러 부서에 많이 있는 직임으로 7품에서 5품까지 보임된다. 가령 금부도사라고 하는 무서운 의금부도사도 이러한 도사인데 종8품부터 보임될 수 있는 직임이다. 별같은 고려와 조선 초기에 나라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조사하거나 감독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하던 벼슬 이름으로 뒤에 아사로 바뀐 직임이다. 체복별감體別監 監의 명을 몸소 받아 나가 벼슬아치에 군무에 관한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임시 벼슬로서 고려와 조선 초에 있었으며 체복사體復使로 부르기도 했다. 요컨대 중요하고 날카로운 직임이었고 정예관원이 뽑혀나가는 후일의 안행어사와 같은 직임으로 보면 된다. 경상 좌 우도는 경상도를 지금과 같은 남북

로 가로 지루지 않고 길게 동서로 갈라 동쪽을 좌도 서쪽을 우도라 하였다. 다음 같은 해 세종 7년 1425년 11월 27일자 실록의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임술壬戌 행동고幸東郊** 세자 호종世子扈從 차우진관전면次于秦觀川邊 관방도觀方袍 차명대 호군권복次命大護軍權復 호군김대 운수등육인사지護軍金允洙等六人사之 이함기포사관감심친以驗其砲射砲甲深淺 우사군기감又使軍器監 왕광주성산도성백악往廣州城山郡城白岳 방신포放信砲 이함포성지원근以驗砲聲之遠近 ; 임술 일에 동쪽교외에 행차하니 세자가 호종하였다. 살곳이 냇가에 막차를 차리고 포를 쏘는 것을 관람한 다음 대호군 권복과 호군 김운수등 6인에게 명하여 활을 쏘게 하고 그 화살이 감주를 뚫음이 깊고 알음을 짐작케 하였다. 또 군기감으로 하여금 광주의 성산과 도성의 백악에 가서 신포身布 (신포로 쏘는 화포)를 쏘게 하여 포성이 멀고 가까움을 조 정연케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 司猛公(諱:叔衡)派 世譜刊行委員會 會議 開催

사맹공

(휘 속형) 파

세본간행위원회의 개최

북아공과 판서공계 사맹공(諱叔衡)19세 문중에서는 세보편찬을 위해 지난 8월 20일(월) 안동시 대화동 소재 파중회관에서 제1차 세보간행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권기호 간행위원장은 지난 정사년에 이어 이번에도 내실 있는 과보를 편찬하기 위해 후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수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수단작업에 들어갔으며, 특히 권오의 사무장에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후손들도 빠짐없이 수단에 참여하여 누단자를 최소화시킬 것을 지시하고 시내 평화동한정식청운에 마련된 오찬을 들면서 일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이날



사맹공 세보간행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식대는 권춘호(대구)씨가 전액 부담하였고, 권태호(안동)씨와 권태도(봉화)씨도 성금을 내어 일만한

출발을 하였다. <資料提供: 派宗會 總務部長 權五翼>

# 愛國志士 3代 巢雲, 惺破, 清溪 先生

애국지사

대 소운

성파

청계 선생

구 한말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니 소운선생 3부자는 의병을 모집하여 관동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으로 당시 정세를 가늠할 수 있다. **애국지사(愛國志士) 소운 권인규 선생(巢雲 權仁圭先生)** 선생의 휘는 인규요 자는 경명이며 소운은 호이다. 안동권씨31세로 문장공 국제선생 보(溥)의 18세 손이요 평후공 충(衷)의 15세손이고 오죽헌 증참판 처균은 선생의 9대조이다. 세대로 강릉에 살았기 때문에 창해족이란 씨족의 이름이 붙었다. 조부는 한 덕이요 아버지가(德)이니. 현종(憲宗)9년 계묘에 강릉 경포면 초당리에서 출생하였다.

하여 백성을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이니 진실로 사랑으로 보호하기를 지성으로 하면 백성들이 자기 부형과 같이 생각할 것이니 무엇이 걱정이 되리오 슬프고 아픈 일이다. 시운이 좋지 않고 나라가 이같이 어려우니 동학 무리들이 난을 일으켜 평온한 날 얼굴에 피를 뿌려 팔도가 진동하도다. (中略) 동도(東徒)가 밖으로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이름으로 선전하니 연로(沿路)의 우민(愚民)이 동심치 않음이 없으며 허성과 공같이 비밀비재하여 평민을 침해하는 것이 전일보다 배가 더하니 합하께서 이럴 때에 어찌 편할 것이며 좋은 음식인들 어찌 맛이 있겠습니까. 백성을 근심하는 자는 백성들도 또한 근심하니 우국(憂國) 흥민(恤民)의 마음이 아버지가 자식 사랑 하듯 하면 자원이 편할 것이리라. 중략(中略).

하락(下略) 이는 선생의 우국흥민(憂國恤民)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11월에 일본이 청군을 파한 후로 길을 빌려 우를 취할 기세로 선생이 이부사에게 의병을 이르켜 왜를 칠 것을 권하니 이회원이 늙고 병들었다고 사양한다. 동년 갑오 칠월 관찰사 이위에게 글을 보내 시사대책(時事對策)을 논하고 십이월에 창의문을 지어 팔도에 포고하고 의병을 불러 모으니 관동구군에 응모자가 팔천여 명이 라 드디어 관동창의도총소를 설치하여 도총창의의 책임을 맡고 1월에 민장군, 이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도총소에 들어왔다. 민장군(용호)로 대장을 삼고, 이장군(병책)로 부장을 삼고, 그 아들 중해(鍾海)로 선봉을 삼아 방략을 주어 약속하니 그 포고문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러하다. '분발하여 의용을 떨치고 기운과 힘을 내면, 살아서 충신 의사가 되어 국가만엔 대업에 빛이 날 것이요 죽어서 역대의 혼백이 되어 지하여 예대 선왕의 영령을 대해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니 더불어 그 신명을 아끼어 이적금수지역에 들지 않는다면 그 득실의 차이가 어찌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영남호중이 모두 우리 동방 추로(鄒魯)지향인대 안동 예안 제천 등지에서 통문이 계속 들러 오고 영서에 민장군(용호)의 군대가 모이니 비단 훈자가 아니라 팔로(八路)주군(州郡)이 같이 말함이 없어도 의성이 크게 떨치니 인심은 전심이라 이는 곧 하늘이 더러움을 싫어 하사 나로 하여금 간사한 것을 배척하여 삶을 꾀하라는 명을 받았다. 내가 말하노라 머리를 깎는 자는 살아도 삶이 아니요, 목숨이 아까워 부모에게 물려 받은 머리를 깎고 오랑캐 금수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득실의 차이가 아니라 의리가 있는 곳에는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울 것이니 일본에 의기가 있는 사람은 이심을 두지 말고 분발하여 의병에 부임하면 어찌 대장부의 기개가 아니리오 중략(中略)

상모가 비범하고 우람이 활약하며 총명이 과인하여 가정에서 수확하는 데 문일지십(聞一知十)하나를 들으면 끝까지 아는 지혜가 있었기에 나이 약관에 능히 십삼경(十三經)을 통달하고 또 학자 되기 위한 학문을 연마하였고 공력(功効)과 과거 공부는 힘쓰지 않았으며 자호(自號)를 동봉이라 하니 고종 12년 을유 12월에 평창도 암면 이야지에 당을 만들고 왕래하면서 별호를 소운(巢雲)이라 하니 이는 이태백의 시를 좋아 인용하여 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일전에 관군이 령을 넘었을 때 적령이 없었고, 비밀리에 기병(起兵)이라는 명령이 서화할지니 알지 못한 고을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소동(騷動)치 않을 수 없고 봉평(逢平)에 주진하여 적을 포획하여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삶을 남음이 없으니 어찌 인자의 병사입니까? 공사 간에 비용은 수단급인데 포획한 적은 몇 사람에게 불과하고 관군과 일병의 잔학은 더욱 더 심하여 백성은 궁핍하고 재물은 탕진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합하는 관동구군(關東九郡)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로 관동(關東)초모사(招募使)까지 겸했으니 가이 일할 날이 있을 것이며 공을 세울 기회라. 방금 천주를 부르고 모이는 자들은 ××와 같으니 이는 복하니 이부사가 전과 같이 사무를 보았다. 그러나 동학무리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 경군도 이를 당할 수 없어 선생이 이를 진정할 계획을 부사에게 사오차에 걸쳐 모두 절충하고 일을 끝내니 이부사가 사우(師友)로 대접하여 후 고기를 보내 대접하였다. 당시 편지 중 두어 구절을 간략하면 '민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편할 것이다.

죽기를 맹세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무관과 포군을 모집하여 관동구군의 창의소를 설립하여 계획이 정연하고 약속이 이미 정한지라 슬프

지금의 태수는 옛날의 제후와 같이 고을을 다스리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다스리는 법은 어진 정치

를 펴치는데다가 이르렀으니 존경하여 받드는 도리에 있어 어찌 이러한 사태가 있었는가? 당해군수의 행위는 만만(萬萬) 부당(不當)한 망령된 착오(錯誤)이므로 우선 1개월의 벌봉(罰俸) 사령서(辭令書)를 작성하여 보내니 당해군(當該郡)에 전승(轉送)하고 더욱 근신(謹愼)케 하라. 고산(古山)과 경호(景鎬) 두 증봉은 살살이 뒤져, 거이코 잡아서 각별히 통렬(痛烈)하게 죄를 다스리고 단소(壇所) 파헤친 곳은 옛과 같이 다시 쌓아 올려 따로 수호하게 하고 권의일(權宜)금배이 죄수를 놓치고, 事食主人石召史가 죄수를 관대히 하여 도망치게 한 일들은 모두 생각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본부(本府) 제97호 보고서(報告書) 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한바 은곡사(雲谷祠) 옛터는 선현(先賢)의 위패(位牌)를 묻은 곳이므로, 조정(朝廷)에서 예우(禮遇)하고 신(土林)들이 경묘송양(景慕崇仰)하는 오랑수목 신중(眞重)하거늘 당해군수(當該郡守) 김운란(金允蘭)은 증들이 무고(誣告)하는 한편 말만 편벽되게 듣고 단소(壇所)를 파헤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존경하여 받드는 도리에 있어 어찌 이러한 사태가 있었는가? 당해군수의 행위는 만만(萬萬) 부당(不當)한 망령된 착오(錯誤)이므로 우선 1개월의 벌봉(罰俸) 사령서(辭令書)를 작성하여 보내니 당해군(當該郡)에 전승(轉送)하고 더욱 근신(謹愼)케 하라. 고산(古山)과 경호(景鎬) 두 증봉은 살살이 뒤져, 거이코 잡아서 각별히 통렬(痛烈)하게 죄를 다스리고 단소(壇所) 파헤친 곳은 옛과 같이 다시 쌓아 올려 따로 수호하게 하고 권의일(權宜)금배이 죄수를 놓치고, 事食主人石召史가 죄수를 관대히 하여 도망치게 한 일들은 모두 생각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한다) 단(壇)과 제(祭)터를 파헤친 것이 경호와 처정 두 중의 손으로 행하여진 것임은 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축탁(觸突)을 받고 소장을 거절한 일체 사실은 형리들에게 힘본하였으나 끝내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하니 필경(畢竟) 혐의(嫌疑)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달리 조사할 방법으로는 전혀 흔적을 잡을 수 없다. 이에 신문(新聞)에 응한 각인(各人)과 구속한 범인의 명단은 기록을 작성하여 함께 상부(上府)에 보내고, 은곡사(雲谷祠) 유지(遺址)의 글과(碑破)한 현상은 군수(郡守)가 친히 도면을 작성하여 상부에 보냈으며 군수는 곧 귀환(歸還)하였다.

# 譯抄 陵洞實記

<지난호에 이어>

## 慶尙北道觀察府報內部書

앞서 도착한 부(部)41호(號) 훈령(訓令)의 내용에 의거하여 영천군수(永川郡守) 이범석(李範錫)으로 조사관(調查官)을 정하고 훈령을 등사(謄寫)하여 비밀히 타일리 경고하였더니 지금 조사보고를 접수하였으나, 단소(壇所)의 파헤친 곳은 우선 다시 쌓았고, 형리(刑吏) 김상구(金尙九)는 따로 구속하였고 그 조사한 조서(調書)와 도면(圖面)을 아울러 첨부하여 보고하오니 사조(查照)하시기 바랍니다(伏望)합니다. 광무(光武)6년(서기 1903년) 8월5일 관찰사(觀察使) 조기하(趙幾夏)

## 後錄查案臚本略

이는 각인(各人)들의 문초기록(問招摺錄)인바, 사당(祠堂)의 옛터는 받들어 살피는 곳임이 완연(宛然)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경건(敬虔)하여지고 단(壇)과 담의 둘러쌓은 석축(石築)은 엄연(儼然)히 사모(思慕)하는 정성이 깃들인듯하여 그 정성의 가득하고 두터움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무릇 것이 동글고 못이 방정(方正)한 인사(人士)는 그 고상(高尚)한 자취를 사모하지 아니할 자 없거늘, 저 머리가 벗어지고 옷이 검은 다른 무리들이 감히 방자하게 범행(犯行)하였으니 중 경호(景鎬)는 허무(虛無)로 도(道)를 삼고 협잡(狹雜)이 본성(本性)이 되어 근거도 없는 절의 산과 형태도 없는 탑(塔)의 돌로써 중 고산(古山)과 결탁(結託)하여 경부(京部)에 거짓 고소(告訴)하고 계속하여 관찰사(觀察使)에게 제소(提

訴)하여 이같이 전무(前無)한 과변(乖變)을 저질러 놓고 끝내 현지검증(現地檢證)하는 길에는 중로(中路)에서 뒤로 빠져 지름길로 달려 가서 흩어진 모래와 깨어진 돌을 모아 단소(壇所)를 만들었고, 권씨(權氏)와 형리(刑吏)를 힐문(詰問)하는 자리에서 이의(異意) 없이 자복(自服)하였다. 중 고산은 총섭(總攝)을 도둑(圖得)한 뒤로부터 감잡기 담(膽)이 커졌는데 마침 경호의 사주(使敎)함을 듣고 때를 놓칠세라 허구(虛構)로 엮고 감아 급히 내부(內部)에 제소하고 사찰(觀察)에게 청탁하여 처음에는 권씨를 그들의 절로 옮겨 가두고 만금(萬金)돈을 강탈(強奪)하려 하였으니, 계략(計略)은 비록 행하여지지 않았으나 그 죄상(罪狀)을 생각하면 경호보다 오히려 심한 자라, 경호와 고산 두 중을 병합(併合)하여 중형(重刑)에 처할 것이나 모두 법망(法網)에서 새어 나가 아직 잡지 못하였고, 치정승(致定僧)은 단소를 헐고 팔 때에 동행(同行)하였던 자니 그 죄는 경호와 같으나 또한 도망하여 아직 잡지 못하였고, 형리 김상구(金尙九)가 제사(祭祀)터와 벽돌을 파헤친 것은 현장 검증하는 길에 들어났고 소장(訴狀)을 저지(阻止)한 것은 현상(現狀)으로 환원(還元)한 뒤에 있었으니, 거짓 조작(造作)하고 서로 호응한 것은 그 자취를 보는 듯하므로 반복하여 힐문하였으나 현재 의심스러운 장물(贓物)이 없으므로 원래의 정황(情狀)에 따라 죄를 정한은 과중(過重)할까 두렵다. (刑刑) 吏 崔鳳燁이 訴狀을 거절하고, 事 獄刑吏 金相이 죄수를 놓치고, 事 食主人 石召史가 죄수를 관대히 하여 도망치게 한 일들은 모두 생각

# 동정

▲권정달 본원 총재·하회별신굿 보존회 이사장은 본지를 통해 별신굿의 세계화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권도업 장관의 SNS소통 1번지'라는 간담회를 31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말부터 7월초까지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국토·해양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질문을 받은 뒤 장관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보고 없이 난상토론을 갖는 NO-paper 전략회의를 갖고 실과 소장 50여 명과 함께 경복산림사업 개발원과 3대문화권 사업에정지 현장을 둘러봤다.

▲동아대 권오대(66) 신임총장이 1일 부산 부민동 부민캠퍼스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8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권순일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53, 사시22회)을 임명했다.

▲권영빈 한국문화예술회장은 13일 내년도 배너스비엔날레의 한국관 커미셔너로 김승덕 씨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前 경북도청이전추진본부 보상추진단장 권영길씨(權寧吉, 53, 안동)가 지난 7월 3일 대구도청이전 총괄과장으로 임명됐다.

다 우리 오백년 대소민들! 섬오랑캐가 하늘에 찻는 악을 어찌 참아 말하리오 강산에는 이릉의 원수가 남아있고 우주에는 또 팔팔이는 번고나 나니 (민비시해閔妃弒書) 끝내 그놈들의 배를 쪼개고 간을 찢지 못할망정 참아 또 머리를 숙이고 그놈들에 호령을 따른단 말이나 하랴(下略) <권영작> <다음호에 계속>

## 正獻公 鷄林府院大君 王煦先祖秋享祭案內

民統線내(長端) 正獻公의 秋享祭와 密直公王重貴(十五世), 府尹公 諱 肅(十六世), 執義公 諱 嚴(十六世), 左尹公 諱 循(十七世), 花山府院君 諱 復(十七世), 直長公 諱 得(十七世), 知敦寧府事公 諱 格(十八世), 禮祭公 諱 至(十八世), 主簿公 諱 永暉(十九世), 선조님의 추향제를 하기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p>▲ 일시 : 2012년 10월 14일(음 8월 29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p> <p>▲ 교통편 : &gt; 자가용 등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전진교광장에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요. &gt;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로터에서 오전 7시 30분 전세버스가 출발예정 (서울 참례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p> <p>▲ 접수미감 : 2012년 9월 30일</p> <p>▲ 회비 : 1만원(필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기타 : &gt; 참례자는 필히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gt; 전세버스를 이용코자 하시는 종원은 접수미감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p> <p>▲ 연락처 : 회장 : 권준식 (02)932-6267, 010-7517-6267 사무처장 : 권석연 011-289-3856</p>
---	---

2012년 9월 1일

### 安東權氏正獻公派宗中 會長 權 俊 植